

# 스웨덴 플랫폼 노동자의 불분명한 지위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스웨덴

송지원 (스웨덴 스톡홀름 경제대학 박사후 연구원)

## ■ 머리말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태스크래빗(TaskRabbit) 등의 플랫폼 등장 이후 이를 활용하여 노동을 수행하고 거래하는 플랫폼 노동 역시 큰 주목을 받고 있다.<sup>1)</sup>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노동시장의 이해관계자인 노동계, 산업계, 정부 모두 플랫폼 노동자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체계에 편입시킬지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여부는 스웨덴의 조세와 사회보장체계, 노동권 보장 등 여러가지 영역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의 노동시장 관계자들이 바라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지위와 예상되는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의

영국 하트퍼드셔(Hertfordshire)대학에서 실시한 플랫폼 노동자 연구에 따르면 2016~2017년 한 해 동안 스웨덴의 경제활동인구(16~64세) 중 약 10%가량이 플랫폼을 활용한 노

1) 박제성(2016), 「플랫폼 노동 혹은 클라우드 워크」, 『국제노동브리프』 14(8), pp.3~6.

동을 수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 플랫폼 노동을 전업으로 삼은 이의 수는 적었으며, 플랫폼 노동에 따른 수입이 자신의 소득 중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3%였다.<sup>2)</sup> 한편 스웨덴 정부가 실시한 다른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스웨덴 경제 활동인구 중 약 2.5%(15만 명)에 해당하는 인력이 플랫폼 노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하지만 이들이 실시한 조사 및 연구 모두 플랫폼 노동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의 기반이 디지털(웹 및 모바일)상에 있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 킥 워크(gig worker), 온라인 노동(online labour), 크라우드 워크(crowd work), 마이크로 워크(micro work)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렇게 플랫폼 노동의 정의가 파편화되고 통일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플랫폼 노동의 정의를 시도한 이해관계자는 스웨덴 국세청(Skatteverket)이었다. 국세청은 플랫폼 노동을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내에서 활동하는 노동행위로 규정하였다.<sup>4)</sup> 특히 거래된 자원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플랫폼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 ① 물질 혹은 자원을 포함하여 거래된 플랫폼의 형태(Uber, Airbnb, Car2Go: 전 세계, Sunfleet, Qasa: 스웨덴)
- ② 금융자본을 포함하여 거래된 플랫폼(소액금융, 크라우드 펀딩 등)의 형태(Kickstarter, LendingClub: 전 세계, FundedByMe, Toborrow, Lendify: 스웨덴)
- ③ 물리적 서비스 제공 및 거래 플랫폼(채용 및 가사 도우미)의 형태(Taskrabbit, Upwork: 전 세계, Taskrunner, Sendoo: 스웨덴)<sup>5)</sup>

국세청의 플랫폼 노동 및 노동자에 대한 정의는 그 범위를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지만 이 밖에

2) Huws, U., Spencer, N., Syrdal, D. S., & Holts, K.(2017), "Work in the European gig economy: Research results from the UK, Sweden, Germany, Austria, the Netherlands, Switzerland and Italy".

3) SOU(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2017: 24), Ett arbetsliv i förändring – hur påverkas ansvaret för arbetsmiljön?, Arbetsarknadsdepartementet, Stockholm.

4) Skatteverket(2016a), Delningsekonomi. Kartläggning och analys av delningsekonomins påverkan på skattesystemet. Regleringsbrevsuppdrag, slutrapport. Rapport 131 129 651-16/113.: Skatteverket, Stockholm.

5) Skatteverket(2016b), Kartläggning och analys av delningsekonomins påverkan på skattesystemet, Delrapport, Skatteverket, Stockholm.

스웨덴 내에서 플랫폼 노동 및 노동자를 규정하는 합의된 정의는 현재까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은 여전히 모호하고 불분명한 노동형태라고 볼 수 있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불분명한 정의는 플랫폼 노동자를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에 편입시키지 못하는 문제로도 연결된다.

## ■ 플랫폼 노동자와 사회보장제도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중 소득기반 사회보장(연금, 질병수당, 육아휴직, 실업급여 등)은 대체로 고용주가 납부하는 사용자 기여금 혹은 자영업자가 직접 납부하는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를 일반 노동자(employee)로 볼 것인지, 자영업자(self-employed)로 볼 것인지의 여부가 소득연계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소득연계 질병수당은 노동자 경우 현 직장의 임금을 바탕으로 수혜여부와 금액의 정도가 결정되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소득을 바탕으로 그 금액을 판단하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를 어떤 지위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신청자가 소득연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자 할 때에도 수령 대상자의 지위가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달라진다. 소득연계 실업급여는 실업보험기금에 최소 12개월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한 후 실업 상태에서 수령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최소 6개월간 경제활동을 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동자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기반 사회보장 혜택과 관련해 플랫폼 노동자를 새로운 지위로 인정할 것인지 혹은 노동자로 분류할 것인지 그 기준이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다.

플랫폼 노동자의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례로 실업보험청이 2016년 발표한 독립 계약자(contractors)의 지위 관련 보고서가 있다.<sup>6)</sup> 독립 계약자는 개인 노동자가 한 명 혹은 몇 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고용관계 없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형태로 볼 수 있다. 실업보험청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데 있어 독립 계약자를 노동자로 볼

6) Inspektionen för arbetslöshetsförsäkringen(2016), Uppdragstagare i arbetslöshetsförsäkringen, Rapport 2016:3, IAF, Stockholm.

것인지, 자영업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했는데 이는 계약자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독립성의 정도라고 밝혔다. 즉 계약자가 자신을 고객과 완전히 독립된 개인으로 여길 때 자영업자로 분류하는 것이다. 계약자의 독립성을 따지는 과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혹은 노동자의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법률 조언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물론 실업보험청이 보고서를 통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긴 했으나 27개의 개별 실업보험펀드들이 자의적으로 계약자의 지위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업보험청의 보고서를 계약자 지위 판단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소득연계 사회보장 외에 일반적인 사회보장 혜택(아동수당, 기초연금) 및 사회서비스(의료 및 돌봄) 제공 등은 거주기반으로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내 지위가 어떠한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 ■ 플랫폼 노동자의 조세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관련 특별 규칙이나 제도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플랫폼 노동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도 플랫폼 노동자를 일반노동자로 분류할 것인지, 자영업자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노동자는 노동소득을 기반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플랫폼 노동자 중 자기자신을 자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들은 노동소득을 바탕으로 세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으로 인한 소득에는 정규고용으로 인한 소득과 비정규 혹은 일시고용으로 인한 소득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와 같이 고용으로 인한 소득기반 세금을 납부한다.

한편 스웨덴 국세청은 플랫폼 노동이 스웨덴 세금제도에 세 가지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라 주장했다. 첫째, 플랫폼 노동으로 인한 소득이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 국세청은 플랫폼 노동의 모호성 때문에 세금 혹은 사회보장기여금을 누가 납부해야 하

는지 그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sup>7)</sup> 특히 스웨덴 국세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에 참여한 개인들이 그들의 소득을 온전히 보고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했다.<sup>8)</sup> 플랫폼 노동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스웨덴 국세청이 개인 주택의 임대(에어비엔비를 포함)로 인한 소득신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400개 주택 중에 20%만이 제대로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노동으로 인한 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현재 스웨덴의 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소득세, 노동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경제활동(사업 등)에 대한 사업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플랫폼 노동으로 인한 소득을 어떤 분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 주택 임대의 경우 자산으로 인한 소득으로 분류하곤 하지만 경제활동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도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호한 지점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플랫폼 서비스를 어떤 종류의 서비스로 분류해야 하는지 서비스 제공자(플랫폼 노동자) 및 고객 모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세금 책정에 어려움이 있다.

스웨덴 국세청은 플랫폼 노동이 스웨덴 세금체계에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플랫폼 노동에 대한 특정 규칙이나 규제를 두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분류(노동자, 자영업자)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여전히 회색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기존 세금 체계에 포함시킬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관련한 개별 사례들이 쌓이면서 기존 세금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다.

7) Skatteverket(2016b), Kartläggning och analys av delningsekonomin påverkan på skattesystemet, Delrapport, Skatteverket, Stockholm.

8) Skatteverket(2016a), Delningsekonomi. Kartläggning och analys av delningsekonomin påverkan på skattesystemet. Regleringsbrevsuppdrag, slutrapport. Rapport 131 129 651-16/113.: Skatteverket, Stockholm.

## ■ 플랫폼 노동자를 향한 노조의 움직임

현재 스웨덴에서 플랫폼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노조 결성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페이스북 및 기타 소셜미디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이 개별적인 모임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노조 및 준노조와 같은 조직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적은 편이다.<sup>9)</sup> 현재 스웨덴 내 몇몇 노조(Unionen을 비롯한)는 자영업자를 조합원으로 받고 있는데 이들 노조 대표들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비슷한 형태로 노조 가입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조들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조의 역할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포섭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스웨덴 최대 노조 중 하나로 스웨덴 화이트칼라 대표 노조인 유니오넨(Unionen)은 에이전시 노동자(파견직)들을 노조로 포섭하고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Instajobs(고숙련 노동자 대상), Gigstr(다양한 임시업무 담당)이라는 새로운 하위 조직을 만들고 이들을 단체협약에 포함시켰다.<sup>10)</sup>

공유경제 및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유니오넨(Unionen)은 최근 독일의 금속노조(IG Metall)와 협정을 맺으며 어떤 방식으로 플랫폼 노동에 접근할지, 해당 노동자들을 어떻게 노조로 포섭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로 하였다.<sup>11)</sup>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유럽 내 노조인 독일 금속노조(IG Metall), 오스트리아 노총(Austrian Trade Union Confederation), 스웨덴 유니오넨(Unionen) 등은 FairCrowdWork Initiative를 만들어 플랫폼 노동과 기업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 노조들은 플랫폼 기업들의 정보와 노동자들의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FairCrowdWork는 hotline이라는 하부조직을 두어 스웨덴과 독일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급여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수단을 만들었다.<sup>12)</sup>

9) Eurofound(2018), Digital Age -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of selected types of platform work, National context analysis: Sweden.

10) Nordic Innovation(2019), The knowledge-intensive platform economy in the Nordic countries

11) Nordic Council of Ministers(2017), Nordic labour markets and the sharing economy, National Background Reports.

12) Fair Crowd Work(2019), <http://faircrowd.work/>

한편 유니오넨(Unionen)의 연구원 Söderqvist은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정책 제안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이다. 그는 플랫폼 노동에 대응하는 노르딕 접근법을 제안하였는데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 갖추고 있는 산별 단체협약에 현재의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함시켜 이들을 기존의 노동시장 질서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Söderqvist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용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존 산업의 노동자들과 다르게 사무실 혹은 공장에 모여 일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Söderqvist는 단체협약을 디지털화하면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기업) 및 노동자 모두가 이 협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된 단체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up>13)</sup>

최근 스웨덴 플랫폼 노동자의 단체협약과 관련해 인상적인 사례가 있었다. 스웨덴의 한 운송 플랫폼 기업 Bzzt은 Podtaxi라는 택시 형태의 수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우버와 비슷한 형태이지만 훨씬 작은 규모이고, 단거리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우버는 스웨덴의 노동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은 채 일부 사업을 철수했다. 우버는 플랫폼 기업 및 플랫폼 노동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스웨덴 택시 운전자들이 속한 단체협약 혹은 노동조건에 포함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Bzzt의 경우, 택시산업에서 체결하는 산별 단체협약에 가입하여 현재 Podtaxi 운전자들은 다른 택시운전자들과 같은 조건(임금, 기타 노동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의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 포함된 사례로 눈여겨볼 만하다.<sup>14)</sup>

13) Söderqvist, F.(2017), "A Nordic Approach to Regulating Intermediary Online Labour Platforms," *Transfer: European Review of Labour and Research* 23(3), pp.349 - 352.

14) Turula, T.(2017). "These tiny electric tuk-tuks are taking on Uber in Stockholm — offering a 'super cheap' and emission-free ride," *Business Insider Nordic*, May 10, Online edition, <http://nordic.businessinsider.com/these-hilarious-electric-tuk-tuks-are-now-taking-on-uber-instockholm---super-cheap-zero-emission-and-fair-to-drivers-2017-5>

## ■ 맺음말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은 스웨덴의 기존 노동시장 질서와 사회보장체계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와 자영업자 중 어느 지위로 인정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가 이들을 사회보장체계 및 노동시장에 포함시키는 데 있어 중요할 전망이다. 이 글에서 확인하였듯, 현재 스웨덴의 사회적 파트너들을 비롯한 노동시장 관계자들은 기존 노동시장의 운영방식으로 플랫폼 노동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노동시장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회보장체계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중 소득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적지 않은 만큼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를 기존 노동시장의 지위(노동자 혹은 자영업자)로 인정하고 조세 징수와 권리보장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스웨덴의 전통적 산별 단체협약 및 산업별 동일(에 가까운) 노동조건이 노동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포용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스웨덴 노동시장 관계자들이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를 다루는 방식은 플랫폼 노동형태가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어떠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11**